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대관규약

N H N LINK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대관규약

【시행 2024. 03. 0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약은 엔에이치엔링크 주식회사("운영사")가 운영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이하 "삼성홀") 내 시설 및 부대시설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정의)

-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준비', '녹음', '촬영', '철수'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대관자"라 함은 본 규약을 인정하고 운영사의 대관승인을 받아 운영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 "운영사"는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 3 조(대관의 범위)

운영사가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부대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
|------------------------|
| ① 기본시설 : 삼성홀 공연장 |
| ② 부대시설 : 대기실 등 기타 부속시설 |

제 4 조(대관의 종류)

1. 대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준비대관(준비대관, 철수대관)으로 구분한다.
2. 정기 대관은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 운영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을 받아 승인, 확정한다, 단, 운영사가 인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 외의 공연도 신청, 승인할 수 있으며 본 항의 경우 운영사의 사정에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3. 수시대관은 운영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잔여 일정이 발생하거나 또는 대관 취소로 인하여 잔여 일정이 발생할 경우 신청을 받아 승인, 확정한다.
4. 공연대관은 공연장과 부대시설을 동시에 대관하여 실제적인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을 말한다.
5. 준비대관은 기본대관에 부수하여 공연 전에 무대설치 및 리허설 등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6. 철수대관은 기본대관에 부수하여 공연 후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대관을 말한다.

제 2 장 대관 신청, 승인 및 계약

제 5 조(대관신청)

1. 대관신청자는 대관신청 시 '대관신청서', '공연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기간은 운영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운영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② 공연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공연장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③ 계약 체결 후 대관 취소를 하거나 또는 작품 변경을 2 회 이상 한 단체 또는 개인
- ④ 대관료 미납 또는 체납된 단체 또는 개인
- ⑤ 특정한 종교나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⑥ 기타 공연의 내용, 수준이 공연장에서 수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
- ⑦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청

제 6 조(대관승인기준)

1. 대관승인은 대관자의 사용내용과 단체수준, 극장운영계획과 방침을 고려하여 대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신청인의 과거 대관사용 실태 및 공연장 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기준에 우선순위를 정한다.

- 1. 국제적 수준의 공연 및 다수의 실적이 있는 공연단체
- 2. 출연자 및 스텝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 3. 제작능력을 인정받는 단체
- 4. 기타 운영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

2. 운영사는 대관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개별 통보한다. 단, 공연대관 이외의 연습실 등 부대시설 사용 신청과 관련한 결과는 신청서와 유선 승인 통보로 이를 대신한다.

3. 대관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계약금에 대한 계좌번호와 금액 등이 기재된 대관계약서가 개별 통지되며, 대관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 후 계약금(기본대관료의 50%)을 납부 하여야 한다.

4. 운영사는 대관신청의 승인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일정 조정, 대관기간 및 내용의 조정 등을 대관신청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5. 대관자는 운영사가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대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6. 운영사는 대관 승인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공연과 관련한 자료의 추가적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접수한 대관자는 운영사의 문서발송일(또는 대관자에게 최초로 문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이의 제기 및 요구자료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연에 필요한 부대시설사용은 대관계약 후 '부대시설 사용신청서'를 스태프회의 직후 운영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대관 계약 및 대관료 납부)

1.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기본 대관료의 50%를, 공연시작 60 일 전까지 나머지 잔금을 운영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단, 수시대관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7 일 이내 전액 납부)
2. 공연준비대관 시작일 이전에 발생하는 추가대관료는 발생 즉시 납부해야 하며, 이후 발생한 대관료는 공연 종료일 7 일 전까지 전액 납부 정산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공연 시작 7 일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마지막 공연일로부터 7 일 이내 납입된 사용료와 실제 사용료를 대조하여 초과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4. 대관일정 변경 및 연장공연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되는 대관료의 경우 즉시 납부한다.
5. 대관자가 부대시설 사용료 및 추가대관료 등을 미납했을 경우 운영사는 해당 미납금액을 입장권 판매대금에서 우선 공제하여 대관자의 대관사용료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사는 대관자에게 입장권 판매대행금액 정산 시 대관사용료 미납 분을 공제 후 지급한다.
6. 대관자의 요청으로 대관기간 내 휴관할 경우 공연하지 않은 날도 공연 1 회 기준 대관료를 납입해야 한다.
7. 대관자가 대관료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운영사는 대관승인 및 대관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대관자가 기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8 조(대관료 반환)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영자의 승인 하에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①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 ② 운영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 ③ 부대시설 신청 후 사용 30 일 전 취소한 경우(부대시설 사용료 100% 반환)
- ④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 1 급 감염병으로 인한 정부, 방역 당국 또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집합금지, 집합제한, 영업장 폐쇄 등)으로 인해 공연 진행이 절대 불가능한 경우(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단, 대관자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손실 보상을 받는 경우 및 방역 당국 또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집합금지, 집합제한, 영업장 폐쇄 등) 외에 대관자가 임의 판단으로 공연을 중단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승인취소 및 중지, 대관신청제한)

1. 운영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①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상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② 본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또는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 ③ 운영사의 승인 없이 과다한 입장권을 발행하여 관람객의 민원이 발생 소지가 있거나 피해가 있을 경우
- ④ 삼성홀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 ⑤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⑥ 대관자가 운영사의 승인 없이 공연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 ⑦ 본 규약을 위반한 경우
 - ⑧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운영사는 그 행위 사실이 알게 된 때로부터 1년간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① 운영사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 ② 단체가 계약체결 후 년간 2회 이상 대관취소 또는 작품 변경을 한 경우
 - ③ 운영사에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 ④ 본 규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⑤ 제 1 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정지된 경우

제 10 조(사용시간)

1. 삼성홀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준비대관 : 오전 9 시부터 오후 10 시까지
 - ② 공연대관 : 오전 9 시부터 오후 11 시까지
2. 대관 기간이 7 일 이상 연속으로 이어지는 경우, 6 일 공연 1 일(월요일)을 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휴관일에는 대관료를 산정하지 않는다.
3. 철야 및 조조 시간 사용에 대해서는 운영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른 할증이 적용된다.

제 11 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 12 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1. 대관자는 삼성홀의 시설 설비의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운영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완료 즉시 원상 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2. 본 조 1 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운영사가 먼저 철거 또는 폐기한 후 대관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운영사가 대관자를 대신하여 철거 시 발생한 설치물의 손상, 파손 등에 대해서 대관자는 일체 운영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운영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변상하지 않는다.
3. 대관자는 공연장 객석, 로비 및 무대에 공연에 관련 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4. 대관자는 운영사의 시설물 철거요청에 즉시 응해야 하며 운영사의 철거 요청 통지로부터 1 일 이내 즉시 철거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5. 대관자가 공연장 로비 및 기타 공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운영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3 조(대관 계약의 해지)

1. 대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사는 대관자에게 문서로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대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대관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 또는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③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스스로 이를 신청한 경우
 - ④ 제 3 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 ⑤ 대관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위 제1항의 경우에 대관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4 조(대관취소)

1.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신청서"를 운영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아래와 같이 천재지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한 대관 취소 시 운영사는 본 규약 제 8 조에 따라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며, 이외의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
 - ① 폭우, 폭설, 태풍, 지진, 폭염, 한파 등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재난 주관 기관에서 이동 및 집합을 강제로 제한한 경우
 - ② 국가 소요 사태, 사변 등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 ③ 사전 예고되지 않은 지역 단위 이상 범위의 정전, 단수, 통신 단절 등으로 인해 공연 준비가 불가하거나 당일 공연 진행이 불가한 경우
 - ④ 자연재해 또는 화재, 테러 등으로 인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용 불가하여 대관 개시일 이전까지 복구가 불가한 경우
 - ⑤ 국가 또는 지역 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집합금지, 시설폐쇄 명령 등으로 인해 시설 사용이 제한된 경우
 - ⑥ 기타 운영사와 대관자가 상호 합의 하에 인정되는 불가항력의 경우

제 3 장 관리 및 준수사항

제 15 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1.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운영사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대관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 조(특정 소방시설물의 방염 등), 제 21 조(방염성능의 검사)"와 "동 시행령 제 30 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별소방대상물)와

제 31 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운영사(방화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장치 반입 및 설치가 가능하다.

3. 운영사는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 부대시설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5. 대관자는 운영사가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대관자는 공연장 부속시설 파손 시 운영사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7. 운영사는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철수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운영사의 고의, 중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의 경우, 운영사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8. 대관자는 운영사가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운영사는 대관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9.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10. 대관자는 원칙적으로 공연장에 화분 또는 화환을 반입할 수 없으나 공연과 관련해서 필요시에는 운영사와 사전협의에 의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1.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분장실 사용에 있어 귀중품의 관리 및 안전문제에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귀중품의 분실 및 도난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의 책임으로 하며, 어떠한 배상도 운영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
12. '공연법 제 11 조의 4(안전교육)' 및 '공연법 시행령 제 9 조의 4(안전교육)'에 따라 삼성홀 대관자는 대관 개시 후 운영사에서 진행하는 1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대관 현장에서 이수해야 한다.

13. 대관자는 위 12 항의 안전교육 중 55 분의 교육 시간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위탁한 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교육 이수를 증빙하는 수료증을 대관 개시 전까지 운영사에 제출해야 한다.
14. 위 13 항에 따른 수료증 제출자는 대관 개시 후 운영사에서 진행하는 5 분 이상의 안전교육을 대관 현장에서 이수해야 한다.
15. 본 조항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을 거부하는 인원에 대해 운영사는 무대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대관자의 물적, 시간적손해에 대해 운영사는 배상하지 않는다.
16. 본 조항의 안전교육 이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취학 전 아동 또는 초등 저학년이 출연하는 대관 건에 대해 운영사는 승인을 거부하거나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6 조(공연내용 임의변경금지)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 자체를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관(일정변경, 내용변경,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운영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운영사는 이내용 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7 조(대관일정 변경금지)

1.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관(일정변경, 내용변경,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충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운영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2. 대관일정 변경 후 이로 인한 대관료 할증 발생 시 대관자는 대관일정 변경 승인 즉시 추가 대관료를 납부해야 하며, 1 차 변경 후 재 변경은 불가하고 이로 인한 대관 취소시 기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18 조(광고 · 홍보물의 협의)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 홍보물 제작 시 운영사와 관련된 사항은 운영사의 제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운영사가 지정한 서식 이외의 광고 · 홍보물은 공연장에 게첨할 수 없으며, 운영사의 CI는 모든 홍보물에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제 19 조(방송 및 판촉 등)

1. 공연장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운영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대해서는 운영사와 협의해야 한다. 이로 인해 관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사는 필요좌석의 판매를 유보할 수 있다.
2. 공연 중 판촉, 사인회, 리셉션 등을 개최할 때는 운영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운영사와 관련된 운영사 내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대관자는 운영사에 광고, 홍보물 부착/설치할 경우 운영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따라 게첨한다.

제 4 장 입장권

제 20 조(입장권의 발행)

1. 입장권의 발행은 운영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공연시작 60 일 이전에 입장권 발행 시 대관자는 대관료 잔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자가 잔금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 운영사는 대관자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2. 모든 입장권은 전산발권을 원칙으로 하며 판매개시일 이전에 운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대관자는 입장권 발행에 필요한 좌석 배치도 및 티켓팅시스템 계약서, 입금확인증의 자료를 첨부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3. 삼성홀의 입장권 판매대행수수료는 운영사의 판매대행수수료에 준하도록 한다.
4. 입장권의 모든 판매는 고객들의 편의와 티켓발권 시스템을 위하여 삼성홀의 티켓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좌석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6.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한다.
 - ① 취학 전 어린이의 입장은 불가합니다.(단, 공연성격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제한연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공연 시작 전까지 입장을 완료해야 하며, 공연 시작 후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공연 중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안내된 시간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③ 지정된 좌석에 앉으셔야 하며 공연 중 좌석 이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④ 공연장 안에서는 촬영 및 녹음 등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⑤ 음식물, 카메라, 꽃다발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 ⑥ 휴대하신 휴대용 전화기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8. 대관자는 입장권 판매 시 운영사 회원 및 관계사 회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입장권 매표는 대관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운영사에서 전담한다.

제 5 장 공연진행

제 21 조(공연진행의 정의)

'공연진행'이라 함은 공연준비기간을 포함한 공연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진행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 22 조(공연진행 협조)

1. 스태프 회의는 다음의 원칙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 ① 대관자는 무대작업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연준비대관 시작일 최소 2 주 전까지 운영사의 무대기술팀이 주최하는 스텝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 ② 스텝 회의에는 대관자 및 운영사의 무대기술팀, 대관담당자 및 하우스매니저가 참석해야 한다.
- ③ 대관자는 스텝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운영사 대관 및 무대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2. 무대진행 및 백스테이지 관리는 다음과 같다.

- ①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에 대관자는 운영사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운영사 기술진의 감독 하에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공연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이 지며,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장비의 안전 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운영사 무대감독이 책임을 진다.
- ③ 대관자는 백스테이지 출입 시 운영사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이 출입증 발행을 위해서 대관자는 백스테이지 출입자 명단을 무대작업 개시 7 일 전까지 운영사의 무대기술팀에 제출해야 한다.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운영사는 백스테이지 출입을 불허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④ 대관자는 무대기술팀의 요구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가. 무대기술관련 자료
 - 공연대본, 시놉시스 5 부

- 무대장치 평면도 5 부
- 무대장치 입면도 및 스케치 5 부
- 조명 Plot 2 부(외부디자인일 경우)
- 조명기 사용 목록 1 부
- 무대기계 상하부 기계사용 계획 3 부
- 공연진행 큐시트 3 부

나. 공연 세부 안내자료

다. 공연일정표(작업 및 리허설, 공연일정 등) 5 부

라. 방염관련 서류(아래 3 가지 양식 중 1 가지 제출)

- 방염성능 시험성적서(소방서발급)
- 방염성능 검사확인서(한국소방검정공사 발급)
-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예 : 섬유기술연구소 등)

3. 공연진행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공연 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1 시간 전부터 공연종료 마감까지를 말한다.
- ② 청소, 냉난방 등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객석관리와 공연진행 및 객석 안전관리는 하우스 매니저가 담당한다.
- ③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운영사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하며, 공연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무대감독 및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 ④ 대관자는 운영사에서 정한 공연자료수집 및 관계기관의 공연자료요청, 운영사의 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공연 설명 목적으로 공연프로그램(발행시)60 부, 공연 OST(발매시) 10EA, 공연 DVD(발매시) 5EA, 공연포스터 20장을 발매 후 7 일 이내에 운영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공연 성격에 따라 입장연령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운영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 23 조(입장제한)

운영사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①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 ②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 ③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④ 운영사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 ⑤ 기타 운영사가 안전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 6 장 부 칙

제 24 조(적용규정)

1. 본 규약은 운영사와 대관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 본 규약은 대관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필요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운영사는 그 사실을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서면이 운영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개정된 규약이 종전의 규약에 갈음하여 대관계약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에 대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대관자는 위 제 2 항의 통지를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운영사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주소의 변경이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운영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대관자가 위 제 3 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 제 2 항의 통지가 수취불능으로 반송되더라도 위 제 2 항의 효력은 그대로 발생한다.

제 25 조(규약 위반시 책임)

1. 이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관한 책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
2. 대관자는 운영사가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제 3 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운영사에게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제 26 조(규약 외 사항)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운영사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제 27 조(시행일 및 경과조치)

1. 이 규약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약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대관계약에 대해서는 대관자의 동의(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 28 조(관할법원)

이 규약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운영사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